

# 의안검토보고

의안 번호	제118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1999. 11. 19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재근		

## 1. 검토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'98. 10. 2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되어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계장이 담당주사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(안 제6조)

## 2. 검토결과

- 본 조례는 측량법 제58조,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. 5. 1 조례 제15호로 제정되었고, 이후 2차에 걸쳐 개정된바 있으나 1998.10. 2 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개정요지 및 검토의견

- 안 제6조중 “동정계장”을 “행정업무담당주사”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3. 참고자료

- 측량법 제58조, 동법시행령 제35조

# < 관 계 법 령 >

## [ 측 량 법 ]

第58條 (地名委員會) ①地名의 制定·變更 기타 地名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·決定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中央地名委員會를, 特別市·廣域市 또는 道에 市·道地名委員會를, 市·郡 또는 區(自治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市·郡·區地名委員會를 둔다. <改正 97·1·13>

②市·道地名委員會는 市·郡·區地名委員會의 보고를 받아 地名을 審議·決定하여 中央地名委員會에 보고하며, 中央地名委員會는 市·道地名委員會의 보고를 받아 이를 審議·決定한다. <改正 97·1·13>

③建設交通部長官은 中央地名委員會에서 審議·決定된 地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. <改正 97·1·13>

④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中央地名委員會의 機能·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, 市·道地名委員會 및 市·郡·區地名委員會의 機能·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<改正 97·1·13>

## [ 측 량 법 시 행 령 ]

제35조 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시·군·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97·12·9>

②시·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(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가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 <개정 97·12·9>

③시·군·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 <개정 97·12·9>

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·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이상으로 하고, 시·군·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. <개정 97·12·9>